

사적의 보존과 지정 (史蹟의 保存과 指定)

金 哲 峻

<文化財委員會 第3分科 委員長>

I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는 선인(先人)들의 생활유적(生活遺蹟)으로서 지나간 시대(時代)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이해(理解)함에 있어서 주요근거가 되어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의 대상이 되는 사적(史蹟)의 선정(選定)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또 일단 지정된 사적보존(史蹟保存)의 책임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있으므로 그 보존의 경비를 생각지 않고 지정(指定)의 수만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경제력(經濟力) 우리의 문화능력(文化能力)이 과연 전통문화(傳統文化)진부를 모다 정리하고 바로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반성(反省)과 관련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사적문제(史蹟問題)를 인식(認識)하는 우리의 문화수준(文化水準)과 사회상황(社會狀況)에 대한 소감이 있어 그 일단만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II

우리 민족(民族)이 정착(定着)하여 살아 온 만주(滿洲)와 한반도(韓半島) 지역에서는 민족사(民族史)의 성장과정(成長過程)이나 한민족(韓民族)의 문화체질(文化體質)의 형성과정(形成過程)을 연구(研究)하는데 주요자료(主要資料)가 되는 유적(遺跡)들이 많다. 특히 한반도(韓半島)전지역은 기후가 온난(溫暖)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조건(生活條件)이 좋았던 까닭으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이래 오늘날까지 각시대(各時代)의 생활유적(生活遺跡)들이 계층적(階層的)으로 쌓여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적분포(遺跡分布)의 밀도(密度)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유적(遺跡)은 문헌자료(文獻資料)가 나오는 시대이전(時代以前)의 생활상(生活相)을 그대로 말하여 주는 것이므로 제일차자료(第一次資料)의 구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시대(歷史時代)에 들어와서의 유적(遺跡)들도 문헌(文獻)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으나 설사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실증적성격(實證的性)을 갖는 유적(遺跡)을 그 문헌자료(文獻資料)와 아울러 고찰할 적에는 그 역사(歷史)에 대한 보다 구체적(具體的)인 이해(理解)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서(史書)의 인멸(湮滅)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 유물유적(遺物遺跡)들이 귀중한 제일차사료(第一次史料)

가 되는 경우가 많다.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진흥왕사비(眞興王四碑)나 고구려중원비(高句麗中原碑) 단양(丹陽) 적성비(赤城碑)등은 그러한 예(例)로서 들 수 있다.

한편 역사(歷史)의 기록이란 항상 각시대(各時代)의 사관(史觀) 각시대(各時代)에 소상(所尙)하는 가치관(價値觀) 만을, 다른 말로 하면 좋고 나쁘던간에 역사(歷史)나 문화(文化)의 한 측면(側面)만을 강조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시대적(時代的) 편견(偏見)의 성격을 갖는 당해시대(當該時代)의 표방(標榜)에만 좌우(左右)되어 사물(事物)에 대해서나 생활(生活)에 대해서의 실제적(實際的)인 인식(認識)은 경시(輕視)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政治的)이고 표면적(表面的)인 표방(標榜)들과는 관계없는 분야(分野), 전통적문화체질(傳統的文化體質)의 분야(分野)에 대해서는 무관심(無關心)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족생활능력성장(民族生活能力成長)의 전체상(全體相)을 충실하게 기록할 수 없다는 한계성(限界性)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신귀족층(文臣貴族層)의 한문학(漢文學)의 발달이 그대로 문화전체(文化全體)의 발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고려중기(高麗中期)에 있어서나 또는 성리학사관(性理學的史觀)에 일변도(一邊倒)되었던 조선시대(朝鮮時代) 특히 중기이후(中期以後)에 들어와서 문헌기록(文獻紀錄)의 양(量)은 많아 졌다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문화(文化)의 전부라고 착각하였던 까닭으로 —이것이 우리문화(文化)로 하여금 근대화(近代化)에 뒤떨어지게 한 하나의 원인(原因)이지만 —마침내 인간(人間)의 생활능력전체(生活能力全體)를 의미(意味)하는 것인 「문화(文化)」에 대하여 본질적(本質的)이고도 구체적(具體的)인 이해(理解)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대개 이러한 시대(時代)에는 치자계급(治者階級)의 문화(文化)만을 강조하고 기층사회(基層社會)의 생활능력(生活能力)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다. 어느 면(面)에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문화편견(文化偏見)들은 상층문화(上層文化)뿐만 아니라 서민생활(庶民生活)의 유적(遺跡)까지 포함(包含)하는 모든 유물유적(唯物遺跡)에 대한 과학적조사(科學的調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시대(時代) 생활전체(生活全體)에 대한 객관적(客觀的)인 인식(認識)을 성립시킴으로서 수정(修正)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人間)이 어떤 시대(時代)에서 한번 발견하고 획득한 생활능력(生活能力)은 그 사회가 그 뒤에 보다 생활폭(生活幅)이 넓어진 문화(文化)에로 전환(轉換)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단것에 의해서 해체(解體)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획득한 생활능력(生活能力)은 보다 넓은 문화폭(文化幅)안에서도 하나의 기저적(基底的)인 생활능력(生活能力)으로 남아 있으면서 어느 시대(時代)에 가서는 보다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저력(底力)으로서 새로운 문화(文化)의 체질(體質)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능력(潛在能力)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생리(文化生理)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문화변동(文化變動)이 있을 때마다 앞시대의 생활유적(生活遺跡)을 파괴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능력(文化能力)의 전부(全部)를 포기하고 외국문화(外國文化)를 그 초보(初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요사이 초등학교때부터 영어(英語)를 가르쳐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같이 천박한 편견(偏見)들이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면서 우리 역사(歷史)로 하여금 모방(模倣)만을 일삼게 한다면 민족적(民族的) 에너지의 쓸데없는 소모(消耗)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각시대(各時代)의 유적(遺跡)에 대한 과학적(科學的)인 조사평가(調查評價)나 그것의 확실한 보존관리(保存管理)는 그와 같은 시대적(時代的) 편견(偏見)들을 극복(克服)할 수 있고 민족문화(民族文化)에 대한 체계적(體系的)인 인식(認識)을 성립시킬 수 있는 기초(基礎)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III

사적(史蹟)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와 관리는 먼저 그 사적(史蹟)에 대한 학문적(學問的) 연구(研究)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나라의 역사학(歷史學)·고고학(考古學)·미술사학(美術史學)·과학사학(科學史學)등과 그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관련되는 기타 분야(分野)의 학문(學問), 그리고 보존과학(保存科學)등의 수준여하(水準如何)에 따라 좌우(左右)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학문수준(學問水準)이 과연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水準)에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反省)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사연구(調查研究)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인력(研究人力)의 양성(養成)과 확보(確保), 이에대한 충분한 재정적(財政的) 뒷받침, 그리고 사적(史蹟)의 주요성, 문화재(文化財)의 주요성에 대한 국민적인식(國民的認識)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까지의 사적(史蹟)의 관리(管理)가 대개 관광적차원(觀光的次元)에서 그때 그때마다 시급(時急)하게 행해져 왔고 위에서 말한 조건(條件)이나 준비(準備)가 없었던 까닭으로 문화재(文化財)의 파괴(破壞)만이 되풀이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서 덧붙여 말해 둘 것은 고분(古墳)이나 기타의 문화재(文化財)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발굴하여 정리하는 일만 하게 되고 당해지역(當該地域)전체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體系的)인 조사(調查)는 못하고 말게 되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도굴(盜掘)만을 성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각 사적(史蹟)의 내용(內容)과 성격(性格)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적(遺跡)이 간직하고 있던 유물(遺物)들이 분실(紛失)되어 그 사적(史蹟)의 가치를 반감(半減) 또는 전감(全減)시키는 결과에도 달하고 말았다.

한편 지혜롭지 못한 도시계획(都市計劃)이나 산업개발계획(產業開發計劃)등의 이른바 건설사업(建設事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적들이 파괴되어 사적(史蹟)이나 문화재(文化財)로서의 가치(價値)와 생명력(生命力)을 상실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리(謀利)밖에 모르는 개발(開發)들은 인간(人間)이 생존(生存)하는 기본조건(基本條件)인 인간(人間)과 자연(自然)과의 조화관계(調和關係)까지 파괴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본질서(基本秩序)의 파괴는 사회관계(社會關係)의 혼란을 초래(招來)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서울 중심부(中心部)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고층건물(高層建物)로 말미암아 시내(市內) 어느 가로(街路)를 걸어도 볼 수 있던 북악산(北岳山)이나 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아름다움이 가리워져 마음의 일조권(日照權)을 빼앗긴 시민(市民)들은 도시생활(都市生活)에서 생겨나는 신경질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말한다면 동대문(東大門)은 조선조 말엽(朝鮮朝末葉)에 된 것이지만 남대문(南大門)과는 다른 세련미(洗練味)를 지니고 있다. 아마 동대문(東大門)옆을 지나가는 시민(市民)의 수는 매일 수천만(數千萬)이 될 것이다. 뚝섬행(行) 전차정류장(電車停留場)을 철거할 적에 그 주변지역(周邊地域)을 공원(公園)으로 만들어서 시민(市民)들이 공원(公園)에서 쉬면서 바라보게 하였다면, 또 버스를 보다 넓직한 그 공간(空間)을 여유있게 지나가게 하였다면 동대문(東大門)의 아름다움이 주는 느낌은 배가(倍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空間)들을 시장개발(市場開發)이란 명목(名目)으로 팔아버려 상가(商街)의 분잡(紛雜)만 더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서울에서만 현상이 아니다 각 지방의 중소도시나 심지어는 산곡(山谷)에 있는 사찰경내(寺刹境內)에서도 일어나는 문화유적(文化遺蹟)의 파괴는 이미 전국적(全國的)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産業化)의 압력개발(壓力開發)의 압력(壓力)으로 옛 사적(史蹟)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는 저질(低質)의 산업화(産業化)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국민(國民)들에게 위안을 주고 국민(國民)들의 신뢰(信賴)를 받고 있는 문화재(文化財)는 어떤 문화(文化)의 파동(波動)속에서도 그 파동(波動)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능력(文化能力)의 자신감(自信感)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가통문화(價統文化)의 과거(過去)의 우수성(優秀性)은 곧 새로운 문화(文化)의 창조가능성(創造可能性)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文化財)들을 모리배(謀利輩)의 파괴에 그대로 맡기면서 국민전체(國民全體)의 정신적지주(精神的支柱)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고도 국민정신(國民精神)의 기반(基盤)이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으로서의 몇해동안의 경험은 오늘날의 우리 문화(文化)의 이러한 맹점(盲點)이랄까 한계성(限界性)을 뼈아프게 인식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사적관리상(史蹟管理上)에 나타나는 제문제(諸問題)들은 오늘날의 우리 문화수준(文化水準) 그것에 상응(相應)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否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지방(地方)으로부터 사적지정신청(史蹟指定申請)이 자주 있는 점인데 문화재(文化財)의 조사범위(調查範圍)가 넓어지면 질수록 뒤로 가면서 지정(指定)의 수는 늘어 날 것이나 전국민(全國民)이 인식해야 할 최소한(最小限)의 지정조건(指定條件)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법(文化財法)을 들추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첫째 우리 역사(歷史)의 성장과정(成長過程)에 있어서 정치(政治), 군사(軍事), 경제(經濟)등의 분야(分野)에서 주요한 업적(業績)을 이룩한 위치(位置)에 있는 사건(事件)이나 인물(人物)과 관계되는 곳 둘째 우리나라의 학문(學問) 종교(宗教) 사상(思想) 예술(藝術)등 각분야(各分野)의 발전에 공헌(貢獻)한 주역(主役)들과 관계되는 곳 셋째로 한 유적내(遺跡內)에 있는 건축물(建築物)이나 기타의 유물(遺物)들이 우리 문화사(文化史)에 있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던가 문화연구(文化研究)에 있어서 주요 자료(資料)의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강조하고 염설(艷設)하는 업적(業績)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個人)을 위한 것이나 그 가족적활동(家族的活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던가 그 유적내(遺跡內)의 어떠한 영조물(營造物)도 앞에서 말한 셋째의 가치(價値)를 지니지 못하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地方)으로부터 지정신청(指定申請)의 예(例)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歷史)에 있어서 문화(文化)의 가치기준(價値基準)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지 못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있고 심지어(甚至於)는 어떠한 동기(動機)에서인지는 몰라도 없는 사실(史實), 있을 수 없는 사실(史實)을 날조하여 그것을 사실화(史實化)하기 위하여 지정(指定)을 신청(申請)하는 사례(事例)까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옛 문화(文化)의 기준에서도 오늘날 우리 문화(文化)가 지향(指向)해야 할 가치기준(價値基準)에서도 용납(容納)되는 것이 아니다.